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2	접수연월일	2019. 1. 23
청원인	주소	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	
	성명	홍순주 외 129명	
소개의원	이석주	소속위원회	도시계획관리
건명	위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		
소관위원회	도시계획관리		
<p>○ 광장동 위커힐아파트 51~53동은 1979년 건축 당시 용도지역이 ‘자연녹지지역’이었으나, 「건축법」 제52조(법률 제3073호, ‘77.12.31)에 따라 ‘제2종일반주거지역’인 11~33동과 같이 건축이 허가되어 하나의 단지로 건축되었음.</p> <p>그러나, 현재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이 ‘자연녹지지역’에 있는 51~53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로 인해 51~53동(3개동)을 배제한 상태로 11~33동(11개동)만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,</p> <p>51~53동 거주민들이 도시계획이 정상화된 주거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과, 11~33동과 51~53동을 동일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함.</p>			